결산분석시리즈 Ⅳ

2015회계연도 결산

NABO

성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Ⅳ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6. 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6.7.1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6년「국가재정법」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국가재정법」제57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지난 5월「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6번째로 국회에 제출된 동 결산서는 42개 기관에서 집행한 343개 사업(집행액 26조 4,348억원)에 대한 성평등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을 소개하고, 국가성평등 목표-기관별 성평등 목표-성인지 대상사업-성과목표간 연계성 여부,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성인지 결산서 체계상의 문제, 성과목표 달성 여부, 그리고 성인지 결산의 환류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심사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간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201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차 례

CONTENTS

Ⅰ.「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 3

1. 성인지 결산의 의의 및 추진경과 ····· 3
2.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현황 ····· 6

Ⅱ. 주요 부처별 분석 / 12

1. 보건복지부 ····· 12
2. 중소기업청 ····· 20
3. 고용노동부 ····· 25
4. 국토교통부 ····· 33
5. 미래창조과학부 ····· 38
6. 농림축산식품부 ····· 43
7. 문화체육관광부 ····· 48
8. 외교부 ····· 56
9. 법무부 ····· 61
10. 여성가족부 ····· 66

Ⅲ. 개선과제 / 76

1. 성인지 결산서 구성 및 작성체계 정비 필요 ····· 77
2.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 노력 강화 필요 ····· 81
3. 성인지 결산의 환류 기능 강화 ····· 83

Ⅰ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1 성인지 결산의 의의 및 추진경과

1. 성인지 예산제도 및 성인지 결산의 의미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

동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현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활용되고 있다. 첫째, 양성 불평등적인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용(「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국가재정법」제26조)되고 있다. 셋째, 재정운용을 통한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의지 및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지 결산서(「국가재정법」제57조)가 작성되고 있다.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 하에서, 성인지 결산의 의미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국가재정법」제57조)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운용을 통한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의지 및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강상규 예산분석관(skang@assembly.go.kr, 788-4635)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 및 지방재정 성인지적 예산분석·평가사업(II)」, 2012.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다. 「국가회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은 성인지 예산서와 내용적·형식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에 "성인지 결산서 개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 추진경과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8년부터 여성단체의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을 분석하여 정부와 정당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는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국회 여성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여성부와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인지적 접근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노력의 결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이 2006년 말 제정되었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 제출은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9개 중앙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년에는 동 예산서에 바탕을 둔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었다. 2010년도 성인지 예·결산서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기금사업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성인지 예·결산서부터는 예산사업만이 아니라 기금사업도 대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2011년에는 첫째, 성과목표 달성현황 작성란이 추가되었다. 즉, 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치를 작성·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란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의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2013년에는 성인지 예산서 성평등 목표 작성 시 기존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의 획일적 성평등 목표에서 각 작성기관의 소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평등 목표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1] 성인지 예·결산서 국회 제출 현황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	비고
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기금 포함
2011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2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관별 자체적 성평등 목표 제시
2013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4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5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주: 1.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가 제출됨
2. 중앙정부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시작함
3.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부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공통적 성평등 목표에서 부처별 자체적 성평등 목표 제시

2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현황

1. 성인지 예산 및 기금 결산

정부는 총 42개 기관, 343개 사업, 26조 4,348억원 지출규모의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액은 383억원이 증가하고 대상사업 수는 전년 대비 4개가 증가하였다.

회계별로 대상사업수와 지출액을 살펴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253개 사업(73.8%)에서 17조 3,871억원(65.8%)이 지출되었고, 기금은 90개 사업(26.2%)에서 9조 477억원(34.2%)이 집행되었다.

[표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 분		2014년 집행액 (A)	2015년			전년 대비 (C-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예 산 (일반·특별회계)	집행규모	147,873	177,506	173,871	98.0	25,998
	기관수	41		41		-
	사업수	257		253		-4
기 금	집행규모	78,224	95,769	90,477	94.5	12,253
	기관수	14		15		1
	기금수	23		27		4
	사업수	82		90		8
합 계	집행규모	226,097	273,275	264,348	96.7	38,251
	기관수	42		42		-
	사업수	339		343		4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37개 사업에서 13조 7,55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정부 성인지 대상사업 지출액(26조 4,348억원)의 5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청이 5조 3,185억원(20.1%, 21개 사업), 고용노동부가 3조 7,689억원(14.3%, 45개 사업)의 지출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51개 사업으로 가장 많으며 4,873억원(1.8%)을 지출하였다.

[그림 1] 2015년 성인지 결산 집행액 및 대상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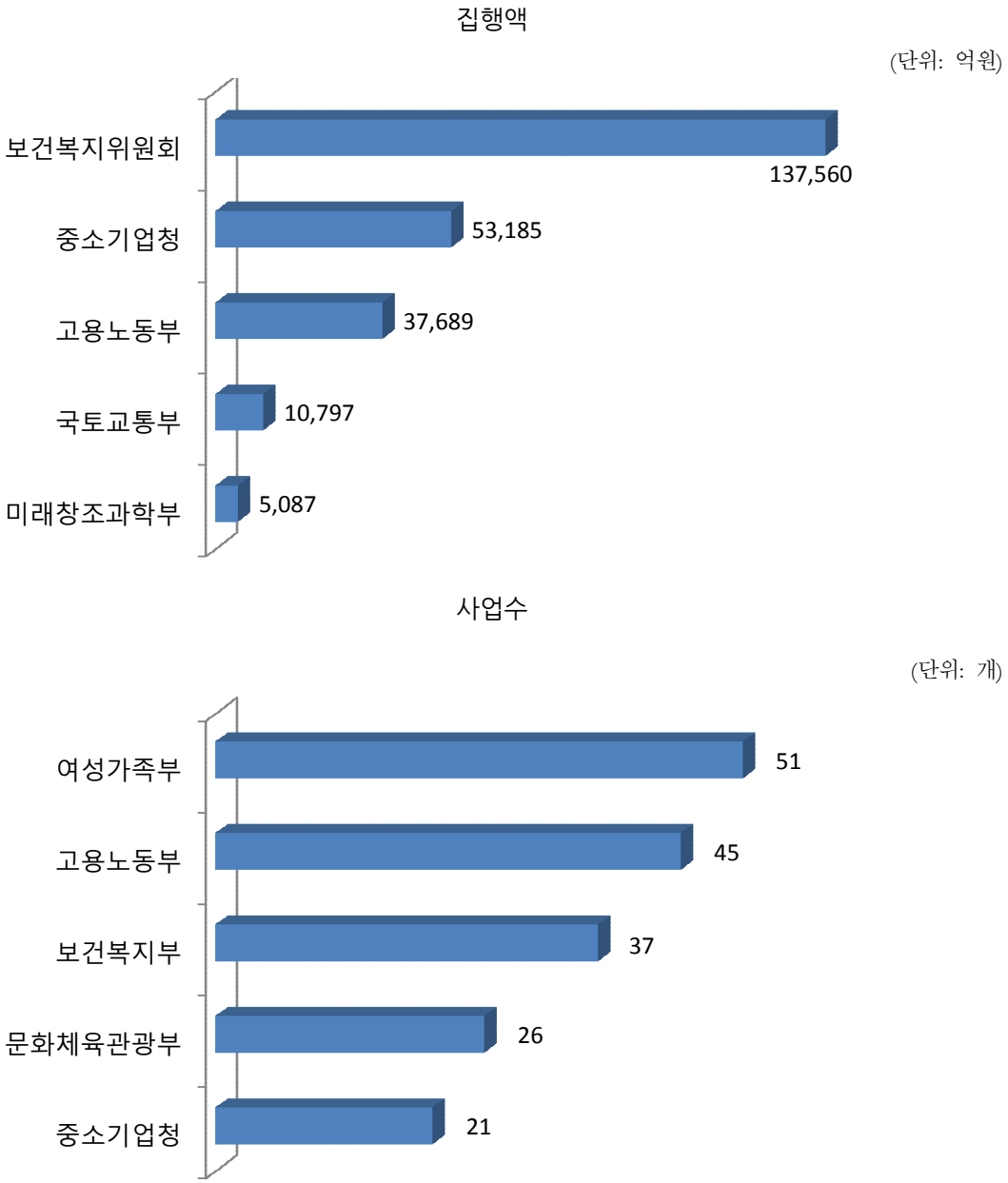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표 2] 기관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대상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회	1	10,321	10,506	10,453	-	53	99.5
대법원	2	50,080	54,285	53,678	-	607	98.9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	168	168	168	-	-	100.0
기획재정부	1	8,623	8,623	8,623	-	-	100.0
교육부	7	58,544	59,609	59,506	20	82	99.8
미래창조과학부	11	512,094	508,743	508,735	-	8	100.0
외교부	12	185,828	187,664	185,955	1,458	251	99.1
통일부	5	51,034	51,396	48,402	-	2,994	94.2
법무부	12	83,488	82,744	82,060	228	457	99.2
국방부	5	30,608	30,755	30,512	55	188	99.2
행정자치부	10	53,466	53,466	52,643	-	823	98.5
문화체육관광부	26	209,863	209,351	208,168	32	1,151	99.4
농림축산식품부	18	463,227	464,216	461,866	829	1,520	99.5
산업통상자원부	6	47,289	47,289	47,289	-	-	100.0
보건복지부	37	14,006,157	13,991,441	13,755,977	32,925	202,538	98.3
환경부	5	25,496	25,605	25,149	16	440	98.2
고용노동부	45	3,839,163	4,041,820	3,768,898	82	272,840	93.2
여성가족부	51	502,261	512,493	487,248	17,263	7,983	95.1
국토교통부	11	1,286,840	1,101,758	1,079,652	-	22,106	98.0
해양수산부	10	33,256	30,300	30,046	190	64	99.2
국민안전처	1	1,422	1,413	1,413	-	-	100.0
법제처	1	306	306	289	-	16	94.4
국가보훈처	4	59,102	58,494	54,850	-	3,644	93.8
식품의약품안전처	2	37,676	39,138	35,147	-	3,991	89.8
국가인권위원회	2	163	163	156	-	7	95.7
방송통신위원회	1	1,089	1,089	1,089	-	-	100.0

	대상 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공정거래위원회	1	73	73	73	-	-	100.0
국민권익위원회	1	18	18	17	-	-	94.4
원자력안전위원회	2	6,700	6,700	6,700	-	-	100.0
국세청	1	21	21	21	-	-	100.0
관세청	2	2,129	2,129	2,084	-	45	97.9
조달청	1	724	724	618	-	106	85.4
통계청	1	1,770	1,770	1,714	-	56	96.8
병무청	1	127	119	119	-	-	100.0
경찰청	4	25,467	25,467	25,465	-	2	100.0
문화재청	3	12,245	12,082	12,050	-	32	99.7
농촌진흥청	9	25,256	24,819	24,629	-	190	99.2
산림청	2	15,713	15,713	15,521	-	192	98.8
중소기업청	21	5,321,706	5,634,206	5,318,519	-	315,687	94.4
특허청	3	4,589	4,589	4,579	-	10	99.8
기상청	3	16,370	16,338	16,036	-	302	98.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8,222	9,893	8,642	1,134	118	87.4
합 계	343	26,998,694	27,327,495	26,434,761	54,232	838,502	96.7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성과목표 달성 현황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의 성과목표는 총 423개이며, 이 중 300개를 달성하여 70.9%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성과목표를 많이 설정한 기관은 여성가족부(66개), 고용노동부(47개), 보건복지부(46개), 문화체육관광부(36개), 외교부(21개) 등인데,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하여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83.3%와 87%의 높은 달성률을 나타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60%대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외교부는 42.9%의 저조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3개 이하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전부 달성한 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처는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이다.

[표 3]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대상사업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국회	1	1	-	1	0.0
대법원	2	2	-	2	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2	2	-	100.0
기획재정부	1	1	-	1	0.0
교육부	7	8	8	-	100.0
미래창조과학부	11	16	15	1	93.8
외교부	12	21	9	12	42.9
통일부	5	6	4	2	66.7
법무부	12	15	12	3	80.0
국방부	5	7	6	1	85.7
행정자치부	10	12	6	6	50.0
문화체육관광부	26	36	23	13	63.9
농림축산식품부	18	20	13	7	65.0
산업통상자원부	6	9	7	2	77.8
보건복지부	37	46	40	6	87.0
환경부	5	8	5	3	62.5
고용노동부	45	47	29	18	61.7
여성가족부	51	66	55	11	83.3
국토교통부	11	16	8	8	50.0
해양수산부	10	11	7	4	63.6
국민안전처	1	1	1	-	100.0
법제처	1	1	1	-	100.0
국가보훈처	4	5	5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2	2	2	-	100.0

	대상사업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국가인권위원회	2	3	2	1	66.7
방송통신위원회	1	1	1	-	100.0
공정거래위원회	1	1	-	1	0.0
국민권익위원회	1	2	2	-	100.0
원자력안전위원회	2	2	1	1	50.0
국세청	1	1	1	-	100.0
관세청	2	3	2	1	66.7
조달청	1	1	1	-	100.0
통계청	1	1	-	1	0.0
병무청	1	1	1	-	100.0
경찰청	4	4	3	1	75.0
문화재청	3	3	1	2	33.3
농촌진흥청	9	11	9	2	81.8
산림청	2	2	1	1	50.0
중소기업청	21	21	12	9	57.1
특허청	3	3	3	-	100.0
기상청	3	3	1	2	33.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1	1	1	-	100.0
합 계	343	423	300	123	70.9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II 주요 부처별 분석

1 보건복지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37개 사업에 13조 9,914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총지출의 25.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3개 사업, 13조 7,434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2,13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개 사업, 322억원, 국민연금기금 1개 사업, 23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3조 9,914억원 중 13조 7,560억원을 집행하여 98.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기초연금지급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의 집행액은 7조 3,998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3조 5,743억원의 54.5%를 차지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집행액은 3조 1,122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3조 5,743억원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두 사업의 집행액 합계가 10조 5,120억원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의 78.3%에 달한다.

김성수 예산분석관(samworld@assembly.go.kr, 788-4636)

[표 1] 보건복지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의료급여경상보조 - 의료급여관리사	12,405	12,405	100.0
	자활사업 - 자활근로	313,803	313,803	100.0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	4,497	4,497	100.0
	-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4,642	4,633	99.8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55,556	55,541	100.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211	2,211	100.0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22,606	22,606	100.0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1,375	1,375	100.0
	장애인활동지원	462,322	459,264	99.3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71,248	71,241	100.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6,506	6,506	100.0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1,426	1,426	100.0
	장애인일자리지원 - 일반형 일자리지원	38,797	38,797	100.0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8,074	8,074	100.0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	100	100	100.0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18,322	18,322	100.0
	기초연금지급	7,581,427	7,399,799	97.6
	노인단체 지원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5,030	4,993	99.3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노인돌봄(기본, 종합) 서비스	136,681	136,681	100.0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일자리 확대	313,732	313,732	100.0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8,163	8,163	100.0
	노인요양시설 확충	31,967	25,960	81.2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사회복지사관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운영사업	378	265	70.2
	사회복지협의회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191	191	100.0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300	1,300	100.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621	596	45.9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5,525	5,002	90.5
	보육돌봄서비스 - 시간연장형교사 - 대체교사 인건비	57,535 5,292	57,535 5,292	100.0 100.0
	영유아보육료 지원	3,112,205	3,112,205	100.0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2,140	22,065	68.7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1,324	1,324	100.0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9,800	8,450	86.2
	어린이집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2,234	152,234	100.0
	공공형어린이집	44,671	44,671	100.0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15,615	1,215,615	100.0
	감염병예방관리 - 감염병관리지원(감염병전문가교육)	1,010	968	95.9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R&D)	2,703	2,046	75.7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213,564	181,648	85.1
소계(34개 사업)		13,956,998	13,721,536	98.3
국민건강 증진기금	모자보건사업 -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	871	871	100.0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31,316	31,316	100.0
국민연금 기금	국민연금상담요원운영 인건비	2,256	2,254	99.9
소계(3개 사업)		34,443	34,441	100.0
합계(A)		13,991,441	13,755,977	98.3
총지출(B)		54,596,881	52,284,142	95.8
A/B		25.6	26.3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총 4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37개(86.0%), 미달성 된 것은 6개로 나타난다.

[표 2] 보건복지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43	37	6	86.0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보건복지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43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37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중 여성 비율이 낮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은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견 분양 신청이 낮은 편으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의료급여경상보조 -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율(%)	90.0	91.7	달성
자활사업 - 자활근로	자활근로 여성 참여자 비율(%)	69.0	64.6	미달성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 광역자활센터운영지원	광역자활센터 여성 종사자 비율(%)	50.0	50.0	달성
- 자활연수원 건립 및 운영	자활연수원 여성 교육생 비율(%)	50.0	50.0	달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탈수급률(%)	17.6	17.6	달성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여성 수혜자 비율(%)	56.0	59.6	달성
지역아동센터 지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아동복지교사 여성비율(%)	95.3	96.2	달성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여성장애인 수혜 비율(%)	42.2	42.4	달성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수급자 여성장애인 비율(%)	38.5	38.5	달성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여성 수혜자 비율(%)	32.0	34.6	달성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 수혜자 비율(%)	38.0	39.9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여성장애인지원사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수혜자수(명)	674	1,160	달성
장애인일자리지원 - 일반형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사업 여성 장애인 참여율(%)	55.8	53.4	미달성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여성 장애인 참여율(%)	35.6	32.6	미달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 기관지원	여성장애인 보조견 수혜비율(%)	60	80	달성
	장애인보조견 분양수(여성)(두)	15	12	미달성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취업확정 여성장애인 비율(%)	37.5	39.2	달성
기초연금지급	수급자수(만명)	436	448	달성
노인단체 지원 -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 참여자 중 여성자원봉사 참여율(%)	54.0	54.5	달성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 노인돌봄(기본, 종합)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여성수혜자 비율(%)	99.0	77.4	미달성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여성수혜자 비율(%)	95.0	87.5	미달성
노인일자리 운영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자 중 여성노인 비율(%)	67.6	68.2	달성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	여성 노인 취업 수혜율(%)	40.0	41.3	달성
노인요양시설 확충	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	85.8	91.2	달성
사회복지사관리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 운영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자수(명)	52,719	57,557	달성
사회복지협의회운영 -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사회복지종사자 직무능력교육 참석자수(명)	9,553	9,778	달성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자수(명)	130,000	130,000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제고(점)	82	82	달성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지역 관내분만율(%)	31.0	31.4	달성
보육돌봄서비스 - 시간연장형교사	시간연장보육이용 아동수(명)	51,500	70,002	달성
- 대체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지원율(%)	72.0	85.6	달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만족도(점)	65	72.7	달성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확충 어린이집 영유아 이용율(%)	87.0	87.9	달성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활동횟수(회)	5	35	달성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평가인증 비율(%)	77.5	78.8	달성
어린이집 지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율(%)	95.0	97.1	달성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명)	85,000	93,000	달성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75	72	미달성
감염병예방관리 - 감염병관리지원 (감염병전문가교육)	감염병전문가교육 여성수혜자 비율(%)	91.0	91.0	달성
	교육생 만족도(점)	82	98	달성
여성건강융복합기반 기술개발연구(R&D)	여성건강지표 산출건수(건)	5	26	달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생활)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여성 일자리 비율(%)	88.0	90.6	달성
	이용자 만족도(점)	77	81.3	달성
모자보건사업 -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	상담센터 상담건수(건)	8,700	10,721	달성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여성수혜자비율(%)	82.6	83.5	달성
국민연금상담요원운영 인건비	여성채용비율(%)	97.5	99.5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보건복지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관리사)사업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성과목표로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율"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는 그 직업적 안정성과 관계된 지표로서 성평등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양성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등 성과목표를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성과목표로 "요양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설정하였으나, 이는 성평등 목표와는 관계없는 성과목표로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지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관리사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 설정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노인요양시설 확충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 설정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부적절성, 어린이집평가인증 사업의 성과목표의 부적절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수혜자 산정 방식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중소기업청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중소기업청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1개 사업에 5조 6,306억원이다. 이는 중소기업청 총지출의 60.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2개 사업 4,69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152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개 사업 3조 2,89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개 사업 1조 8,602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조 6,306억원 중 5조 3,185억원을 집행하여 94.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중소기업청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과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이다.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의 집행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성인지 사업 집행액의 28.2%를 차지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집행액은 1조 4,939억원으로 중소기업청 성인지 사업 집행액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중소기업청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262,000	262,000	100.0
	제조·공정개선기술개발(R&D)	31,160	31,160	100.0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	16,810	16,810	100.0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6,461	6,461	100.0
	여성기업육성	5,650	5,650	100.0
	창업저변확대	900	900	100.0
	창업사업화지원	94,640	94,640	100.0
	중소기업재기지원	600	600	100.0

한성진 예산분석관(hsjin@assembly.go.kr, 788-4630)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벤처기업경쟁력강화	1,770	1,770	100.0
	중소기업컨설팅	19,319	19,319	100.0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28,600	28,586	100.0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1,930	1,865	96.6
지역발전 특별회계	창업인프라지원	15,200	15,193	100.0
소계(13개 사업)		485,040	484,954	99.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투융자복합금융사업	100,000	100,000	100.0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27,000	1,127,000	10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350,000	350,000	100.0
	창업기업자금(융자)	1,500,000	1,500,000	10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2,000	212,000	100.0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10,400	10,400	100.0
	소상공인지원(융자)	1,809,500	1,493,899	82.6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40,266	40,266	100.0
소계(8개 사업)		5,145,566	4,833,565	93.9
합계(A)		5,630,606	5,318,519	94.5
총지출(B)		9,329,949	8,925,500	95.7
A/B		60.3	59.6	98.7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중소기업청은 여성 경제활동 인력 활용기반 내실화와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등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총 21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12개(57.1%), 미달성 된 것은 9개로 나타난다.

[표 2] 중소기업청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1	12	9	57.1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중소기업청은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21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12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9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R&D) 사업은 주요 지원대상인 제조업의 경우 여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신청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창업대학원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보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들이 자율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여성기업인수혜비율(%)	4.9	4.9	달성
제조·공정개선기술개발(R&D)	여성기업 수행과제 수	90	79	미달성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	여성기업 지원비율(%)	11.0	11.0	달성
대중소기업간협력증진	여성(기업/일반) 수혜비율(%)	10.5	10.9	달성
여성기업육성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 평균매출액 증가율(%)	16.2	16.2	달성
창업저변확대	창업대학원 여성 입학생 비율(%)	28.3	22.0	미달성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선정 여성비율(%)	20.0	16.7	미달성
중소기업재기지원	진로제시컨설팅 여성기업 지원비율(%)	12.5	8.7	미달성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인력 채용률(%)	27.0	33.7	달성
중소기업컨설팅	여성기업지원비율(%)	12.4	10.0	미달성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여학생참여비율(%)	34.0	34.1	달성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여성인력 구성 비율(%)	30.0	63.6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여성CEO 비율(%)	15.7	13.9	미달성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9.0	11.1	달성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8.1	8.3	달성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6.7	9.2	달성
창업기업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13.8	13.6	미달성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9.6	7.8	미달성
소상공인창업지원	교육이수자 중 여성비율(%)	55.0	65.0	달성
소상공인지원(융자)	여성기업인 수혜비율(%)	43.0	41.4	미달성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여성수혜비율(%)	31.2	32.0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중소기업청 성인지 사업은 여성인력 활용 제고와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양성 사업과 융자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각각 여성의 참여율과 여성기업의 수혜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성과지표는 목적에 맞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 등에서 여성기업 수혜비율 목표를 단순히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수혜비율의 평균값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대상자 중 여성기업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여성기업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성과목표를 단순하게 최근 3년간 평균치로 설정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질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고용노동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45개 사업에 4조 418억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총지출의 24.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0개 사업 1조 97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개 사업 1,771억원, 기금 30개 사업 2조 9,426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조 418억원 중 3조 7,689억원을 집행하여 93.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8,859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3조 7,689억원의 23.5%를 차지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집행액은 5,899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고용노동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직업안정기관운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1)]	3,794	3,752	98.9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3,285	3,125	95.1
	해외취업지원	37,931	36,177	95.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	320,466	256,184	79.9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9,237	8,495	92.0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 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	14,082	14,081	100.0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중소기업청년 인턴제[1]	17,528	12,259	69.9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32,046	27,763	86.6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2]	590,430	589,892	99.9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1]	2,490	1,762	70.8
	실업자능력개발 지원	63,226	53,992	85.4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2,227	2,144	96.3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 적극적고용개선 지원사업[1]	720	720	100.0
지역발전특별회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	1,133	1,133	100.0
	신규실업자등직업 훈련	638	638	100.0
소계(15개 사업)		1,099,234	1,012,117	92.1
고용보험기금	고용촉진지원금	148,425	143,422	96.6
	고용창출지원사업	73,707	50,400	68.4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6,599	6,599	100.0
	취약계층취업지원[1]	26,175	25,442	97.2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89,991	87,506	97.2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7,033	6,938	98.7
	고용센터인력지원 - 취업지원명예상담원	913	860	94.2
	조기재취업수당	165,885	161,587	97.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462,835	390,794	84.4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181,618	169,397	93.3
	근로자능력개발지원[1]	92,081	87,976	95.5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	333,804	333,651	10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향상과정[2]	241	135	56.1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9,536	23,276	78.8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1]	28,972	28,972	100.0
	기술·기능인력양성	71,476	70,469	98.6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양성	15,460	15,460	100.0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0,000	27,754	92.5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1]	80,097	78,819	98.4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1]	28,709	28,709	100.0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1]	40,752	40,672	99.8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2]	1,062	1,060	99.8
	모성보호육아지원[1]	923,034	885,878	96.0
	고용연장지원금	46,581	34,734	74.6
	장년인턴제취업지원금	32,097	31,290	97.5
근로복지진흥기금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1]	475	474	99.8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1,257	906	72.1
	근로자건강보호[1]	12,150	11,979	9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취업지원	8,457	8,457	100.0
	직업능력개발지원	3,165	3,165	100.0
소계(30개 사업)		2,942,586	2756,781	93.7
합계(A)		4,041,820	3,768,898	93.2
총지출(B)		16,387,756	15,850,593	96.7
A/B		24.7	23.8	

주: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45사업에 총 47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29개(61.7%), 미달성 된 것은 18개로 나타난다.

[표 2] 고용노동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47	29	18	61.7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고용노동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47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29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8개의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여성청소년의 특화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1]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시행지침 변경(각종 자격증 취득과정 의무이수)으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성취업이 많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유아교육 등의 현장실습 참여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성과목표의 미달성과 더불어 지난 3년간 여성수혜자 비중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3년 70.1%, 2014년 67.2%, 2015년 64.7%).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직업안정기관운영 - 취업지원 및 직업지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여성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비율(%)	43.7	44	달성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여성 수혜비율(%)	70.1	64.7	미달성
해외취업지원	여성 해외취업자 비율(%)	55.5	55.3	미달성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일반회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수혜자 여성비율(%)	66.0	62.2	미달성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수혜인원 중 여성비율(%)	70.0	64.6	미달성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 사회적기업가육성 사업	여성 수혜자 비율(%)	50.1	53.6	달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여성참여자 지원실적(명)	604	832	달성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여성인턴채용비율(%)	37.9	35.3	미달성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여학생 수혜비율(%)	37.0	37.8	달성

1) 2014년 학업중단 청소년 51,906명 중 여성은 23,617명(45.5%), 남성은 28,289명(54.5%)으로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여성수혜비율 34.5% 보다 실제 여성 비중이 높다.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여성 저임금근로자(월보수140만원 미만) 사회보험료 지원(명)	830,000	1,059,718	달성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청년여성 수혜율(%)	33.0	38.7	달성
실업자능력개발 지원	여성수혜비율(%)	76.2	76.3	달성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여성수혜율(%)	34.5	23.9	미달성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 적극적고용개선 지원사업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 고용률(%)	38.0	37.4	미달성
취업성공패키지지원(지특)	사업수혜자 여성 비율(%)	58.0	75.6	달성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여성수혜비율(%)	78.0	83.1	달성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수혜근로자 여성비율(%)	68.4	68.2	미달성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창출지원사업 수혜근로자의 여성비율(%)	22.0	21.4	미달성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여성 직업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목표(%)	62.0	72.0	달성
취약계층취업지원	민간위탁 취업건수의 여성수혜율(%)	60.0	60.2	달성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훈련인원 중 여성비(%)	55.5	54.2	미달성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여성취업지원관 및 컨설턴트 채용(%)	70.0	73.3	달성
고용센터인력지원 -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여성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채용 비율(%)	29.8	30.0	달성
조기재취업수당	여성수혜자 비율(%)	34.2	32.1	미달성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여성근로자 수혜비율(전체 지원금대비 여성근로자 지원금)(%)	34.8	34.5	미달성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	여성수혜비율(%)	68.5	69.2	달성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여성근로자 수혜비율(전체 지원금대비 여성근로자 지원금 비율)(%)	64.5	65.0	달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여성수혜율(%)	25.5	33.9	달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저작권 현장 직무능력향상과정	여성 수혜자 비율(%)	52.0	53.0	달성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여성근로자수혜비율(%)	27.0	32.9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실적(개)	810	1,030	달성
기술·기능인력양성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 <다기능과정>	15.0	12.4	미달성
	여성교육 훈련생 양성률(%) <기능사과정>	12.0	17.9	달성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여학생 재학률(%)	24.1	23.4	미달성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여성훈련참여자수혜율(%)	44.0	38	미달성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1년후 고용유지율(%)	82.3	84.4	달성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민간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수(개소)	700	785	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명)	3,500	11,636	달성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개소)	2	1	미달성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제도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80.5	80.8	달성
고용연장지원금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재고용 지원인원(명)	13,500	11,960	미달성
장년인턴제취업지원금	참여자 여성비율(%)	37.5	45.8	달성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여성근로자지원실적(건)	4,360	4,749	달성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여성수혜 비율(%)	19.9	20.6	달성
근로자건강보호	여성근로자 이용률(%)	40.0	45.2	달성
장애인취업지원	여성장애인 취업비율(%)	37.0	37.3	달성
직업능력개발지원	여성수혜비율(%)	33.5	33.3	미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고용노동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의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성 평등 목표와의 연계성이 없는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의 성 평등 목표는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즉,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30~40대 여성이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성고용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동 사업의 성 평등 목표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창출이지만 지원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수혜자 11,636명 중 여성이 70.6%, 남성이 29.4%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성과목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성 평등 목표를 평가하기 어렵다.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인원'에서 '여성수혜자 비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가 부적절하여 설치 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성 평등 목표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한다는 것이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 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수를 제시하는 것은 설치의무 사업장 중 얼마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중 설치율을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돌봄지원과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성과목표가 성 평등 목표와 연계되지 않음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성과목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연장지원금 사업의 성과목표를 지원인원수로 설정하여 제시된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기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여성근로자 지원 비율로 보완하라고 지적하였으나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과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수혜율 성과목표가 미달성되었다고 지적되었으나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경우 2013년 여성수혜율 실적치(35.9%)가 성과목표치(37%)에 미달하였으며 2015년에는 성과목표치(37.9%)가 2013년 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치(35.3%)가 이에 미달하였다. 더욱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2015년 여성수혜율은 2013년 보다 0.6%p 하락하였다.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2013년 실적치(27.6%)가 성과목표치(34.5%)에 미달하였으며 2015년에도 실적치(23.9%)가 성과목표치(34.5%)에 미달하였다. 더욱이 취업사관학교운영 지원 사업의 2015년 여성수혜율은 2013년 보다 3.7%p 하락하였다.

---

2)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4. 7.

3)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4. 7.

4 국토교통부

1.「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국토교통부 성인지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1조 1,018억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총지출의 4.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개 사업 609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개 사업 340억원, 주택도시기금 3개 사업 1조 69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조 1,018억원 중 1조 797억원을 집행하여 98.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국토교통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과 국민임대사업이다.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의 집행액은 5,081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조 797억원 중 47.1%를 차지하고, 국민임대사업의 집행액은 4,173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조 797억원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이홍석 예산분석관(hslee@assembly.go.kr, 788-4623)
조효정 예산분석관(jhj0108@assembly.go.kr, 788-4651)

[표 1] 국토교통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48,100	48,100	100.0
	항공전문인력양성	4,500	4,500	100.0
	물류전문인력양성	1,145	1,145	100.0
	글로벌청년리더양성	5,270	5,270	100.0
	U-city 인력양성	1,400	1,400	100.0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386	386	100.0
	도시재생사업	83	83	100.0
교통시설 특별회계	저상버스도입보조	34,020	33,987	99.9
소계(8개 사업)		94,904	94,870	100.0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511,349	508,095	99.4
	전세임대경상보조	65,996	59,408	90.0
	국민임대	429,509	417,278	97.2
소계(3개 사업)		1,006,854	984,781	97.8
합계(A)		1,101,758	1,079,651	98.0
총지출(B)		24,475,473	23,198,311	94.8
A/B		4.5	4.7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국토교통부 여성인력의 취업 확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생활환경 개선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11개사업에 총 16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9개(56.3%), 미달성된 것은 7개로 나타난다.

[표 2] 국토교통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6	9	7	56.3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국토교통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16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9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7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은 중소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한 인원을 해외건설현장으로 보낼 때 업체에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사업대상자는 공학계열 대학 졸업자이나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은 3.3%로 목표치인 5.0%에 미달하였다.

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 중 글로벌 물류인력양성 여성수혜율이 목표에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해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물류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영역 확대이나, 물류산업 특성상 기계조작 및 현장이 중시되어 전통적으로 여성참여가 저조하여 여성수혜율이 32.3%로 목표치인 35%에 미달하였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수(개)	188	221	달성
항공전문인력양성	여성조종사 교육인원 비율(%)	9.2	9.9	달성
	항공특성화대학 지원 여성참여인력 비율(%)	21.2	18.9	미달성
	항공인턴십 지원사업 여성참여인력 비율(%)	61.2	71.9	달성
	항공기초인력 양성사업 여성참여인력 비율(%)	8.2	6.5	미달성
물류전문인력양성	글로벌 물류인력양성 여성수혜율(%)	35.0	32.3	미달성
	물류기능인력양성 여성수혜율(%)	37.0	66.1	달성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여성 수혜비율(%)	5.0	3.3	미달성
	여학생 입학비율(%)	12.5	-	미달성
U-city 인력양성	U-City 석·박사과정 여성 수혜비율(%)	35.0	24.2	미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국토공간정보인력양성	여학생 수혜비율(%)	53.0	44.4	미달성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여성 수료율(%)	25.0	38.2	달성
저상버스도입보조	저상버스 도입률(%)	21.0	21.0	달성
다가구매입임대출자	그룹홈 지원 수(호)	80	98	달성
전세임대경상보조	그룹홈 지원 수(호)	80	98	달성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만호)	0.7	0.6	미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국토교통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사업의 경우, 성평등 목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확충,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등으로 성인지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 시 세대원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있어 대상 주택의 인적구성 파악이 불가하며, 이에 따라 전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수를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① 성별이 드러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②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여성신청자 우대 등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 확충, 여성 1인가구 및 저소득 청년여성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성과목표의 성인지적 관점 결여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사업은 연간 국민임대 건설호수를 사업수혜자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성과목표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성과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미래창조과학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1개 사업에 5,087억원이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총지출의 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개 사업 4,83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6,800만원, 과학기술진흥기금 1개 사업 22억 4,200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 사업 16억 6,900만원, 정보통신진흥기금 209억 3,000만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087억 4,300만원 중 5,08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이다.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3,882억 9,500만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의 76.3%를 차지하고, 우수학생국가장학 사업의 집행액은 657억 1,500만원으로 12.9%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인지 사업은 중견연구자 지원을 통한 연구자 지원이나 우수학생국가장학 지원을 통한 학생 지원 등 여성인력에 연구비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788-4666)
심예원 예산분석관(ywshim@assembly.go.kr, 788-4631)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중견 연구자 지원(R&D)	388,295	388,295	100.0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7,870	7,870	100.0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R&D)	900	900	100.0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65,715	65,715	100.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9,571	9,571	100.0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R&D)	7,703	7,703	100.0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3,680	3,680	100.0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과학관전문인력양성	168	160	95.2
소계(8개 사업)		483,902	483,894	100.0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운영	2,242	2,242	100.0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지원	1,669	1,669	100.0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20,930	20,930	100.0
소계(3개 사업)		24,841	24,841	100.0
합계(A)		508,743	508,735	100.0
총지출(B)		14,340,891	13,128,827	91.5
A/B		3.5	3.9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총 16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15개(93.8%), 미달성 된 것은 1개(6.2%)로 나타난다.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6	15	1	93.8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16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15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5년 여성 수혜 비율 목표치를 34%로 설정하였으나, 여성 수혜 비율 실적치는 1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동 사업은 국내 기업이나 출연연구기관 등에 해외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과목표 미달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에 5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해외여성과학자 신청이 저조한 것과, 원자력 분야에서 여성과학자가 희소한 것 등 사업내용에 따라 여성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향후 미래창조과학부는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해외여성과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거나, 지원 분야를 다양화 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중견 연구자 지원(R&D)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 여성연구자 선정비율(%)	13.5	14.7	달성
국제 연구인력 교류(R&D)	여성 수혜비율(%)	34.0	13.0	미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여학생 수혜자 수(명)	7,480	7,716	달성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대통령과학장학생 여학생 수혜율(%)	20.0	22.0	달성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여학생 수혜율(%)	28.0	36.0	달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수혜자 만족도(점) * 5점 만점 기준	4.35	4.4	달성
	정부지원금 1억원당 수혜자 수(명)	4,100	4,206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R&D)	여성 수혜비율(%)	23.0	23.5	달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우수두뇌양성프로그램 교육생 신청시 가산점 부여(%)	5.0	5.0	달성
	정보보호 인력채용박람회 여성 정보보호 인력을 위한 별도부스 마련(개)	1	1	달성
과학관전문인력양성	여성수혜비율(%)	64.0	64.3	달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설치운영	여성과기인의 결력개발 및 취업역량 개선정도(점)	0.30	0.38	달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여성과기인 친화도(점)	70	70.7	달성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IT여성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활동(회)	2	5	달성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여성연구원 참여율 확대 유도(%)	14.6	14.7	달성

주: 세부사업별 성과지표가 복수인 경우 대표 성과지표를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재작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이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에게 1~2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15.0%이지만,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은 11.5%이다. 또한 성과목표로 제시한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중 핵심사업의 여성연구자 선정비율은 14.7%로 목표치 13.5%를 달성하였지만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은 향후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성과목표가 여학생 수혜자수로 측정되어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 등을 고려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동 사업에서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진로지원 등을 수행한다. 성과목표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통한 여학생 수혜자수로 측정되며, 2015년에는 목표치 7,480명 대비 실적치 7,716명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업수혜자 중 여학생은 2015년 31.4%로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 44.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 사업은 향후 성과지표 측정 방식을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로 변경하여, 사업대상자 증감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평등문화 확산	중견 연구자 지원(R&D)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중을 고려하여 여성 수혜자 비율을 높일 필요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여학생 사업수혜자 절대치로 성과목표를 측정하여 사업대상자 중 수혜비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과목표 달성도 판단이 어려움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재작성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이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 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성 수혜자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은 31.5%이나,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은 23.5%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3~2015년에 걸쳐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농림축산식품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7개 사업에 4,573억원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의 2.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개 사업 20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개 사업 4,36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개 사업 6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4,573억원 중 4,550억원을 집행하여 99.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사업이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액은 3,367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4,619억원의 72.9%를 차지하고,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사업의 집행액은 271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4,619억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16,420	14,612	89.0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258	3,235	99.3
	농식품공무원교육원교육운영	729	677	9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기계임대	22,000	22,000	100.0
	후계농업인경영 육성	460	460	100.0
	농업경영컨설팅	1,440	1,189	82.6
	농업경영체등록	14,322	14,254	99.5
	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27,121	27,117	99.9

남 희 예산분석관(nhee@assembly.go.kr, 788-4632)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외식산업 육성	1,000	1,000	100.0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5,350	5,342	99.9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336,743	336,743	100.0
	취약농가인력지원	8,610	8,610	100.0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11,400	11,400	100.0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3,419	3,316	97.0
	도농교류활성화	3,420	3,420	100.0
	농산물안전성조사	1,049	1,043	99.4
지역발전 특별회계	농업기반정비(제주)	576	548	95.1
소계(17개 사업)		457,316	454,966	99.5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전통발효식품 육성 - 전통발효식품 육성(민간)	6,900	6,900	100.0
소계(1개 사업)		6,900	6,900	100.0
합계(A)		464,216	461,866	99.5
총지출(B)		16,302,306	13,986,747	85.8
A/B		2.8	3.3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총 20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13개(65.0%), 미달성 된 것은 7개로 나타난다.

[표 2] 농림축산식품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0	13	7	65.0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20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13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7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대다수가 여성인 관계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농작업 참여도가 높은 반면 농기계 운전은 남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사업은 여성농업인리더십(심화) 과정의 격년제 시행으로 인해 2015년에는 해당 과정이 휴강한 관계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남성 수강생이 대부분인 마을권역리더 과정의 신규 시행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 (책임운영)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여성 비율(%)	15.5	13.6	미달성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여성고용비율(%)	61.0	64.8	달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인적자원개발교육 여성 교육생 비율(%)	34.0	37.0	달성
	농업인 및 도시 소비자 여성 교육생 비율(%)	60.0	53.0	미달성
농기계임대	여성 농업인 수혜 비율(%)	47.0	40.3	미달성
후계농업인경영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중 여성 비율(%)	19.0	18.6	미달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대상자 중 여성 비율(%)	16.2	17.0	달성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 조사원 일자리 여성 수혜 비율(%)	86.2	88.5	달성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여성 참여자 비율(%)	33.0	35.4	달성
외식산업 육성	여성 종사자 인원(명)	1,000	1,135	달성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교육 참여 인원(천명)	135	142	달성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여성 농업인 보험 가입률(%)	40.3	48.1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취약농가인력지원	농가 만족도(%)	92.0	86.3	미달성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지원 대상자 중 여학생 비율(%)	60.0	58.9	미달성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수료자 중 여성 비율(%)	25.0	26.5	달성
도농교류활성화	여성 사무장 채용 비율(%)	53.0	61.2	달성
농산물안전성조사	여성 참여율(%)	85.7	91.8	달성
농업기반정비(제주)	지원 대상자 중 여성 비율(%)	33.0	24.4	미달성
	여성 교육생 비율(%)	16.0	25.8	달성
전통발효식품육성	여성 기업대표 수혜자 비율(%)	23.0	44.8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와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목표로 1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은 2030세대 귀농창업교육과 예비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자체교육 확대로 목표치인 2,785명 보다 96.4% 증가한 5,470명을 교육하였다. 동 사업의 성인지 목표는 전체 사업대상자의 25%를 여성이 수혜하는 것이었으나, 전체 교육수료자의 26.5%인 1,448명이 여성이므로 성과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성인지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분포를 토대로 실제 수혜자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성평등 효과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자보다 수혜자가 1.96배 많다는 것은 사업대상자의 산출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1] 이에 동 사업은 성평등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업대상자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다.

[표 4]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성평등 효과분석

(단위: 명, %)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사업대상자	2,785	836(30.0)	1,950(70.0)
수혜자	5,470	1,448(26.5)	4,022(73.5)

주: 1. 2015년 농정원 귀농귀촌 교육 수료자수(공모교육 2,387명, 2030세대 409명, 종합센터 2,674명)
2. 지출액 중 귀농귀촌 교육에 대하여만 수혜자로 집계하여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1)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목표 설정 시 기준이었던 일반공모과정 수료생 뿐만아니라 기획공모과정 등 전 과정이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동 사업은 농업경영체의 등록·관리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을 조사원으로 채용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당초 여성 수혜 비율의 목표는 86.2%였으나 실제 88.5%를 달성하여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재정사업 집행에 있어 양성 평등은 사업대상 집단의 성비와 수혜자 집단의 성비가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여성 비율은 88.5%에 이르며, 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의 급여수준이 낮아 남성 구직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채용인력이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는 성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가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저임금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고 분석하고, 남성의 비중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86.2%)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성별수혜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개선 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표 5] 농업경영체등록 성평등 효과분석

(단위: %)

	전체	여성(비율)	남성(비율)
사업대상자(천명)	39,631	20,308(51.2)	19,323(48.8)
수혜자(명)	642	568(88.5)	74(11.5)

주: 1. 사업대상자: 경제활동인구 중 20세이상 인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매년 1월 기준)
2. 2013~2015 농업경영체등록조사원 채용현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표 6]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전문여성농업인 확대 기반 마련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가 사업수혜자 보다 많아 사업대상자 재산출 필요
경제적 지원 및 농어촌 여성의 역량강화	농업경영체등록사업	성과 목표를 여성이 86.2%로 수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향 조정 필요

7 문화체육관광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26개 사업에 2,094억원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의 3.9%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6개 사업 1,15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개 사업 5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4개 사업786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개 사업 46억원, 영화발전기금 1개 사업 57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094억원 중 2,082억원을 집행하여 99.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회서비스)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의 집행액은 848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2,082억원의 40.8%를 차지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회서비스)사업의 집행액은 305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2,082억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인재양성[2]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2]	1,600	1,600	100.0
	- 3D 전문인력 양성[2]	1,200	1,200	100.0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3,167	3,167	100.0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 사이버방송아카데미 운영	190	190	100.0
	문화다양성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1]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1]	320	320	100.0
	- 무지개다리 사업[1]	2,390	2,390	100.0

조은애 예산분석관(holiocea@assembly.go.kr, 788-4638)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문화정책개발[1)]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1)]	109	109	100.0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2)] -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2)]	100	100	100.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	3,850	3,850	100.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246	240	97.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2)]	84,830	84,830	100.0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15,246	97.9
	예술교류 활성화 -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600	572	95.3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2)] - 전속단체 연수단원운영[2)]	495	209	42.1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228	228	100.0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90	90	100.0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90	90	100.0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90	90	100.0
소계(16개 사업)		115,163	114,520	99.4
관광진흥 개발기금	문화관광해설사육성(지자체, 사회서비스)	3,222	3,222	100.0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1)]			
	- 관광전문인력교육[1)]	224	224	100.0
	- 관광안내인력교육[1)]	100	100	100.0
	- 관광통역안내사교육[1)]	250	250	100.0
	-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1)]	100	100	100.0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1)]	100	100	100.0
	-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1)]	522	522	100.0
	- 관광숙박종사원교육[1)]	100	100	100.0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1)] - 건전여행 풍토 조성[1)]	363	363	100.0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1)]	330	330	100.0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국민체육 진흥기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1,760	11,760	100.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2]	30,502	30,477	99.9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2]	25,360	25,308	99.8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1] - 장애인 체육지원[1]	10,945	10,945	100.0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	4,568	4,554	99.7
영화발전기금	인적자원육성관리	5,742	5,294	92.2
소계(10개 사업)		94,188	93,648	99.4
합계(A)		209,351	208,168	99.4
총지출(B)		5,352,689	5,083,950	95.0
A/B		3.9	4.1	

주: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련 분야의 여성역량 강화,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평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총 36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23개(63.9%), 미달성 된 것은 13개(36.1%)로 나타난다.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36	23	13	63.9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36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23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3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국립극장 전속단체 운영(전속단체 연수단원 운영)사업은 2015년 공연작품 특성 상 남성역할 비중이 컸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관광통역안내사)사업은 성과목표의 미달성과 더불어 지난 3년간 수혜자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통역안내사 선호도가 높은 일본인 관광객의 축소와 남성 관광통역 안내사 진출의 증가가 주요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3D 전문인력 양성	여성참여비율(%) 3D 전문인력양성 여성 수혜비율(%)	41.0 32.0	41.2 34.0	달성 달성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여성참여비율(%)	50.0	58.5	달성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 사이버방송아카데미 운영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여성비율(%)	41.0	41.7	달성
문화다양성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참가자 만족도(점) 무지개다리 사업 여성 참여자 수(명)	80 86,000	- 74,011	미달성 미달성
문화정책개발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여성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참여자 수(명)	16,500	19,243	달성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통일문화교육 여성 참여자 수(명)	300	619	달성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남성 참여자 비율(%)	31.0	28.5	미달성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 공예디자인전문인력 양성	여성교육 수혜율(%)	70.0	85.1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 중 여성비율(%)	81.0	82.8	달성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여성채용인원비율(%)	82.3	89.8	달성
예술교류 활성화 -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여성수혜자 인원 비율(%)	50.0	69.0	달성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전속단체 연수단원운영	여성 연수단원 채용 비율(%)	68.0	53.0	미달성
국악원전속단체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사업대상자의 여성비율(%)	72.0	70.0	미달성
민속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민속국악원 운영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여성인턴단원 채용비율(%)	80.0	80.0	달성
남도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여성단원 채용비율(%)	80.0	100.0	달성
부산국악원 운영 - 전통예술인턴단원운영	여성인턴단원 채용비율(%)	80.0	80.0	달성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 여성비율(%)	72.0	73.6	달성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 관광전문인력교육	관광전문인력교육 여성참여비율(%)	80.9	79.6	미달성
- 관광안내인력교육	관광안내인력 여성참여비율(%)	65.8	77.2	달성
- 관광통역안내사교육	관광통역안내사 여성참여비율(%)	86.0	57.0	미달성
-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카지노리조트아카데미 여성참여비율(%)	25.0	33.0	달성
-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 여성참여비율(%)	12.0	10.8	미달성
-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여성참여비율(%)	75.8	70.3	미달성
- 관광숙박종사원교육	관광숙박종사원교육 여성참여비율(%)	12.6	13.0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 - 건전여행 풍토 조성	건전 및 안전여행 캠페인 여성비율(%)	52.0	51.0	미달성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관리, 운영사업 여성비율(%)	64.4	70.0	달성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정보센터 이용 여성비율(%)	52.0	51.0	미달성
	불편처리센터 이용 여성비율(%)	63.0	57.7	미달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스포츠바우처 여성 수혜율(%)	39.0	39.1	달성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회서비스)	여성체육지도자 수혜비율(%)	58.0	59.8	달성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개방형체육관 건립 여학교 선정비율(%)	50.0	51.6	달성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장애인 체육지원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여성참여 비율(%)	24.3	24.2	미달성
예술인력 육성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육성	여성참여자비율(%)	74.0	74.1	달성
인적자원육성관리	여성영화인의 교육 수혜 비율(%)	46.0	48.0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일부 사업은 사업대상자 통계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않아 성평등효과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수행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대상자의 남녀 비율과 사업수혜자의 남녀비율이 비교 가능하여야 한다. 즉, 대상자와 수혜자 비율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모집단에서의 남녀 분포와 사업의 수혜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여 사업이 남녀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의 세사업인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사업의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교육 참여자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의 대상자를 현업 종사 가이드 등으로 명확히 하고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사업의 성평등 목표 재설정 또는 성인지 대상사업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사업은 여행의 만족도 제고 및 건전여행 유도를 위해 여행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조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정보센터 이용 여성비율" 및 "불편처리센터 이용 여성비율"이다. 정보센터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성이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렵다. 또한 불편처리센터 이용 여성비율을 높이려면, 여행지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늘어야하므로 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동 사업의 새로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문화관광분야 인적인프라 확충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교육 참여자로 동일하게 설정
여성의 안전한 여행문화 정착 유도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정보센터는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불편처리센터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목표 재설정 등이 필요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부적절성 문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여성문화인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의 부적절성,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사업 성과목표 부적절 등이 지적되었는데,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외교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외교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2개 사업에 1,877억원이다. 이는 외교부 총지출의 9.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0개 사업 1,852억원, 국제교류기금 2개 사업 24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877억원 중 1,860억원을 집행하여 99.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외교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해외봉사단(ODA)사업과 글로벌연수(ODA)사업이다. 해외봉사단(ODA)사업의 집행액은 1,155억원으로 외교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860억원의 62%를 차지하고, 글로벌연수(ODA)사업의 집행액은 591억원으로 외교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1,860억원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외교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4,096	3,933	96.0
	필리핀(ODA) -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 역량강화사업	1,765	1,765	100.0
	네팔(ODA) - 네팔 농촌공동체 환경개선 사업	1,400	388	27.7
	파키스탄(ODA) - 파키스탄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역량 강화 센터 건립사업	1,470	1,306	88.9
	동티모르(ODA) - 동티모르 아이나토주 모성보건서비스 개선사업	1,038	1,038	100.0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아프가니스탄(ODA) - 아프가니스탄 이브니시나병원 병동 신축 및 ICU 설립사업	-	-	-
	에티오피아(ODA) - 에티오피아 오토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35	35	100.0
	해외봉사단(ODA)	115,632	115,533	99.9
	글로벌연수(ODA)	59,354	59,114	99.6
	재외동포재단 출연	425	402	94.6
소계(10개 사업)		185,215	183,514	99.1
국제교류기금	한국전문가 육성 - 한국이해프로그램	655	647	98.8
	글로벌 인사교류 - 차세대지도자교류 - 청년교류	1,793	1,793	100.0
소계(2개 사업)		2,448	2,440	99.7
합계(A)		187,663	185,954	99.1
총지출(B)		2,071,483	2,031,401	98.1
A/B		9.1	9.2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외교부는 여성인력의 해외진출지원과 여성의 국제협력 확대를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총 21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9개(42.9%), 미달성 된 것은 12개로 나타난다.

[표 2] 외교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21	9	12	42.9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외교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21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9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2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네팔(ODA)사업 중 네팔공동체 환경개선 사업은 네팔 대지진 및 정치소요사태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였다.

이 외에도 동티모르(ODA)·아프가니스탄(ODA)·에티오피아(ODA)사업 등이 현지에서 사업착수가 시작되지 않아, 성과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동 사업들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2016년 이후 사업착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목표치	실적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JPO 파견자 만족도(점)	77	82	달성
필리핀(ODA) -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 보건 역량강화사업	(주 보건당국자 및 의료인 대상) 산전관리, 산후관리, 피임 및 분만안전교육률(%)	100.0	100.0	달성
	(주민대상) 사전관리, 산후관리, 피임 및 분만안전 인식교육률(%)	70.0	100.0	달성
네팔(ODA) - 네팔 농촌공동체 환경개선 사업	여성자원봉사자 중 현지교육 참여자 비율(%)	20.0	-	미달성
	여성자원봉사자 현지교육 만족도(점/100점)	70	-	미달성
파키스탄(ODA) - 파키스탄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역량 강화센터 건립사업	센터운영계획수립시 여성농민의 교육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개)	3	3	달성
	여성농민을 위한 연수과정 및 참여비율 확대(%)	30.0	-	미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동티모르(ODA) - 동티모르 아이나토주 모성보건서비스 개선 사업	(주 의료인 대상) 산전관리, 숙련인력조산 가정분만 교육률(%)	50.0	-	미달성
	(주민대상) 사전관리, 사후관리, 피임 및 분만안전, 영양 등 인식교육률(%)	30.0	-	미달성
아프가니스탄(ODA) - 아프가니스탄 이브니 시나병원 병동 신축 및 ICU 설립사업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지원수(명)	5,000	-	미달성
	여성 외래/입원 환자수(명)	5,000	-	미달성
에티오피아(ODA) - 에티오피아 오토미아주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역량강화사업	숙련인력 분만율(%)	10.0	-	미달성
	4회 이상 산전 관리율(%)	19.0	-	미달성
	현대적 피임법 이용률(%)	14.0	-	미달성
해외봉사단(ODA)	신규파견 봉사단 성인지 교육 이수율(%)	100.0	100.0	달성
글로벌연수(ODA)	석사학위연수 여성 연수생 참여율(%)	32.0	35.8	달성
	글로벌 연수과정 중 '젠더와 개발' 교육 실시 과정비율(%)	55.0	82.0	달성
재외동포재단 출연	러시아, CIS지역 참가자 성별 균등화 지수(%)	50.0	28.6	미달성
한국전문가 육성 - 한국이해프로그램	여성교육자참가율(%)	60.0	74.2	달성
글로벌 인사교류 - 차세대지도자교류 - 청년교류	차세대지도자 교류인원 여성 수혜비율(%)	36.0	41.4	달성
	청년교류 여성수혜자 비율(%)	54.5	49.3	미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외교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의 경우 파견자 선발이 제1차(영어성적) · 제2차(면접, 영작문시험)로 진행되어, 객관적인 성적으로 평가하므로 선발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동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교부는 동 사업의 성인지 성과지표를 'JPO 파견자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JPO 파견자 만족도는 파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사업의 성별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성과목표로 보인다.

둘째, 「해외봉사단(ODA)」사업의 경우 '신규파견 봉사단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①해외봉사단 중 여성의 비중 제고와 ②봉사단 완료 후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이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봉사단원이 해외봉사단 경험을 살려 향후 경력개발에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동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키스탄(ODA)」사업 중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역량 강화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의 수혜자 측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동 사업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혜자는 각각 12명, 7명, 0명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동 사업 특성상 센터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등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먼저 수행되어 건물 완공이후 센터 운용시점(16년 이후)에 실제 수혜자 산출이 가능하여 2015년의 수혜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동 사업의 초청연수의 연수생을 수혜자로 측정하고, 2014년에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현지 교원의 수를 측정하는 등 수혜자의 측정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성인지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측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성과목표나 성평등 효과분석이 부적절한 사업 현황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부적절 사유
여성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 특성 상 성별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성과목표가 성 평등 목표와 연계되지 않음
	해외봉사단(ODA)	
여성의 국제협력 확대	파키스탄(ODA) - 건조농업대학 농축산 기술역량 강화센터 건립사업	수혜자 측정의 일관성 결여

9 법무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법무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12개 사업에 827억 4,400만원이다. 이는 법무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8개 사업 421억 4,300만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개 사업 27억 8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개 사업 378억 9,400만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 및 계획현액 827억 4,400만원 중 820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99.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법무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과 특정범죄관리사업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337억 7,000만원으로 법무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820억 6,000만원의 41.2%를 차지하고, 특정범죄관리사업의 집행액은 103억 100만원으로 법무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820억 6,000만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법무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121	120	99.6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 성폭력사범 단속지원	2,521	2,506	99.4
	교정교화	8,432	8,376	99.3
	청소년 비행예방	4,804	4,672	97.2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6,095	6,078	99.7
	보호관찰활동	8,663	8,659	100.0
	특정범죄관리	10,722	10,301	96.1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 -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그램	785	785	100.0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교도작업 특별회계	직업훈련	2,708	2,679	98.9
소계(9개 사업)		44,850	44,177	98.5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525	523	99.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33,771	33,770	100.0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3,598	3,591	99.8
소계(3개 사업)		37,894	37,883	100.0
합계(A)		82,744	82,060	99.2
총지출(B)		2,930,165	3,214,991	109.7
A/B		2.82	2.55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법무부는 '성폭력 근절과 인권보장'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총 15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12개(80%), 미달성된 것은 3개(20%)로 나타난다.

[표 2] 법무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15	12	3	80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법무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12개 사업에 총 15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12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3개의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교정교화 사업은 사회적 처우프로그램(귀휴,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의 여성수형자 수혜율 6.9%를 목표로 하였으나 6.7%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직업훈련 사업은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기반 마련을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직업훈련 참가 수형자 중 여성 수형자 비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4.5%를 목표로 하였으나, 4.2%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5년도 남성 수형자 증가율에 비해 여성수형자 증가율이 목표 설정 당시보다 높아졌으며, 여성수형자의 형기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교육만족도(점)	81	84	달성
	교육인원(명)	1,150	1,613	달성
성범죄 등 4대악 사범단속 - 성폭력사범 단속지원	성폭력 사범 단속 강화(명)	31,594	34,681	달성
교정교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귀휴,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여성수형자 수혜율(%)	6.9	6.7	미달성
청소년 비행예방	비행예방 교육평가 점수(점)	81.0	83.4	달성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17.8	14.6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보호관찰활동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7.6	7.6	달성
특정범죄관리	성폭력범죄자 재범 억제 (재범률) (%)	2.0	2.0	달성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 - 법교육 연수 및 체험프로 그램	법질서 확립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교육 강화 (법의식 향상도) (%)	10.5	13.0	달성
직업훈련	직업훈련 여성수형자 수혜비율(%)	4.5	4.2	미달성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진술조력인 양성(명)	10	10	달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센터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율(%)	71.6	66	미달성
	센터의 심리지원 만족도(점)	87	88	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천건)	205	223	달성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명)	10,000	16,106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법무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교도작업특별회계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목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수형자들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 출소 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 만약 여성 수형자를 고려하지 않고 남성 수형자 위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만 갖추고 있다면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수형자들은 소액의 작업장려금(월 1~2만원)을 받는 직업훈련보다 고액의 작업장려금(월 20~40만원)을 지급받는 교도작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무부가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업훈련 수혜비율을 높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동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 수형자의 비율'을 볼 것이 아니라, 남녀 수형자가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해당 프로그램 이수 시 구직이 용이한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형자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사업 중 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은 성과목표를 성폭력 사범을 단속하는 인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성폭력사범 검거율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단속 사범 증가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상 사건(전체 성범죄 건수)이 증가하여 성폭력 단속 사범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단속 사범 인원이 목표치 이상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사업의 성평등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여성 수형자의 경제적 기반 마련, 조속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 유도	직업훈련	직업훈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재설정 필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사업(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	단속 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지표로도 해석 가능하므로, 성과목표 재설정 필요

10 여성가족부

1.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개요

가. 현황

2015년도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현액은 총 51개 사업에 5,125억원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총지출의 82.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1개 사업 3,0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7개 사업 383억원, 양성평등기금 13개 사업 1,745억원이다.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125억원 중 4,872억원을 집행하여 95.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및 기금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아이돌봄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이다.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765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4,872억원의 15.7%를 차지하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집행액은 724억원으로 여성가족부 성인지 사업 집행액 4,872억원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일반회계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	900	802	89.1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	2,353	2,234	94.9
	양성평등문화확산			
	- 양성평등주간기념[1]	132	131	98.6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1]	1,103	1,083	98.2
	여성사전시관[1]	450	449	99.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1]	6,606	6,606	100.0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1]	292	287	98.1

김태은 예산분석관(tekim@assembly.go.kr, 788-4637)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1]	5,194	5,194	100.0
	국제개발협력(ODA)[1]	1,046	958	91.6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1]	1,770	1,679	94.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	44,579	44,482	99.8
	차세대 여성 경력 개발 지원[1]	945	941	99.6
	미래 여성인재 양성[1]	1,100	1,090	99.1
	위기가족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1]	300	300	100.0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1]	400	400	100.0
	가족문화조성사업 - 가족친화기업인증[1]	769	769	100.0
	- 가족친화직장교육[1]	85	85	100.0
	아이돌봄지원[1]	78,716	76,544	97.2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2]	640	640	100.0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2]	7,877	7,877	100.0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	10,050	7,552	75.1
	청소년시설안전지원	768	768	100.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0,752	30,350	98.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3,095	3,095	100.0
	청소년활동 지원[2]	9,737	9,679	99.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2]	1,494	1,492	99.9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1]	3,178	3,113	98.0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2]	300	288	95.9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운영[1]	800	776	97.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1]	943	925	98.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1]	8,049	7,865	97.7
지역발전 특별회계	청소년시설확충(생활)[2]	71,952	54,738	76.1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2]	3,300	3,300	100.0
소계(31개 사업)		299,675	276,491	92.3

회계/기금	세부사업	2015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1]	18,356	17,180	93.6
	청소년 참여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2]	150	150	100.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	4,902	4,869	99.3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2]	6,801	6,800	100.0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2]	2,158	2,158	100.0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	4,860	4,850	99.8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1]	1,105	1,102	99.7
양성평등기금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1]	50	50	100.0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1]	1,260	1,260	100.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1]	72,442	72,397	99.9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1]	2,303	2,275	98.8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1]	3,697	3,490	94.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구축[1]	2,874	2,710	94.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1]	54,070	53,866	99.6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1]	3,490	3,480	99.7
	성매매피해자 지원[1]	12,743	12,728	99.9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1]	2,964	2,961	99.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14,425	14,264	98.9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1]	1,594	1,594	100.0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1]	1,387	1,387	100.0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지원[1]	1,187	1,187	100.0
소계(20개 사업)		212,818	210,758	99.0
합계(A)		512,493	487,249	95.1
총지출(B)		619,790	603,595	97.4
A/B		82.7	80.7	

주: 1)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2)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사업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성평등 목표 및 성과

2015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 인력개발 및 인권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 일가정 양립기반 구축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 청소년 가족과 소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성평등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51개 사업에 총 66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 중 목표가 달성된 것은 55개(83.3%), 미달성 된 것은 11개로 나타난다.

[표 2] 여성가족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 미달성	목표달성률(B/A)
66	55	11	83.3

자료: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6.

2. 주요 분석 결과

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여성가족부는 제시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총 66개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55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1개는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정책환경의 변화로 상용직 비율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위기가족지원 사업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대상 지원 가구수 예측 미흡으로 성과목표에 미달성하였으며,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교육생 수와 취업자 수는 비슷하나 교육생 대비 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료생 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다.

이 중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성과목표가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인데, 2013년 63.4%, 2014년 60.0%, 2015년 57.3%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정책환경의 변화로 상용직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57%임을 감안할 때 일정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54.3% → 55.8% → 56.4%로 매년 개선되고 있어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성과목표의 미달성과 더불어 지난 3년간 훈련 수료 후 취업률이 2013년 74.2%, 2014년 76.9%, 2015년 73.2%로 2015년도에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인지 예산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총괄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국가성평등지수(점)	69.3	69.9	달성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교육 만족도(점)	87.6	87.8	달성
양성평등문화확산 -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개최회수(회)	1	1	달성
양성평등문화확산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90.5	90.7	달성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만족도(점)	88.2	91.8	달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교육인원(명)	67,040	72,611	달성
	교육만족도(점)	85.2	85.3	달성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국외 여성리더 참가자 수(명)	210	214	달성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집행률(%)	100.0	100.0	달성
국제개발협력(ODA)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 여성 수혜자수(명)	3,000	3,464	달성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수혜자 수(명)	42	42	달성
	개도국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직업훈련 여성 수혜자 수(명)	20	22	달성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47.0	48.9	달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60.2	57.3	미달성
	새일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6.8	88.1	달성
차세대 여성 경력 개발 지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6.0	86	달성
미래 여성인재 양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참여 인원 수(명)	7,000	7,067	달성
위기가족지원 -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 수혜가구(가구)	1,445	1,402	미달성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가족가치확산 공모사업 2차 수혜자 만족도(점)	86	86	달성
가족문화조성사업 - 가족친화기업인증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 수(개사)	500	602	달성
가족문화조성사업 - 가족친화직장교육	가족친화 직장교육 이수자 수(명)	6,300	7,296	달성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점)	90	89	미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종사자교육인원(명)	1,215	1385	달성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보조)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서비스 남성수혜자(명)	350,000	359,133	달성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수(개소)	-	-	-
청소년시설안전지원	안전점검 적합개소율(%)	99.0	99.8	달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이용 학생인원수(명)	200,000	293,898	달성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센터고객 만족도(점)	79.8	80.95	달성
청소년활동 지원	여성청소년의 참여비율(%)	50.0	64.5	달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 여성 청소년 비율(%)	20.0	34.4	달성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강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위반 시정 등 개선이행률(%)	92.5	93.8	달성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	위기청소년 예방 전문가 양성(명)	1,070	1,075	달성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종사자 참여율(%)	91.5	88.6	미달성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활성화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위험환경개선율(%)	69.0	77.4	달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세대주 만족도(점)	77	76	미달성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전후 성의식 교육효과성 향상률(%)	0.62	0.64	달성
청소년시설확충(생활)	청소년시설 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명)	8,382	8,046	달성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	청소년시설1개소당 청소년 인구수(명)	1,826	1747	달성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만족도(점)	84.3	84.4	달성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부모만족도(점)	84.3	85.3	달성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수(명)	9,000	9,490	달성
청소년 참여지원 -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청소년 특별회의 운영지침(구성시'성별'고려) 시달 횟수(회)	1	1	달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개소수(개소)	336	156	미달성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성청소년 수혜비율(%)	47.0	47.0	달성

세부사업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사후조치 여성청소년 수혜율(%)	36.8	43.8	달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참여인원(명)	1,600,000	1,823,194	달성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사후 지원인원(명)	1,030	1,055	달성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민간출연금 활용 직업교육훈련 수료 후 취업률(%)	77.3	73.2	미달성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결혼이민 여성인턴 취업자 고용유지율(%)	65.9	49.8	미달성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인원수(천명)	200	171	미달성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만족도(점)	76	76	달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만족도(점)	81	86	달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횟수)	560	814	달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84	85	달성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91	89.2	미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수혜자 만족도(점)	90	92	달성
	피해자보호실적(건)	62,000	65,607	달성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수혜자(명)	7,430	10,397	달성
	가정폭력 가해자의 배우자 인식개선도(%)	93.0	94.0	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88	90.6	달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580	687	달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수혜자 만족도(점)	92.7	91.6	미달성
	무료법률구조처리 건수(건)	6,810	6,909	달성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계,조정사업 만족도(점)	88	89.2	달성
	성매매방지 및 네트워크 사업 참여기관 수 (개)	164	216	달성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수혜자 만족도(점)	95	95	달성

나. 성과목표 및 성평등 효과분석의 적절성

여성가족부 소관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과목표 설정이나 성평등 효과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성과목표로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만 제시하고 있는데, 성 평등 목표가 자녀양육지원 확대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일자리 확대 등 2가지라는 점에서 성과목표를 “서비스이용자 만족도”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가구”로 각각 제시하는 것이 향후 성과목표 달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시설안전 지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사업수혜자는 당해연도 안전점검을 받은 시설이며, 성과목표는 안전점검 적합개소율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성별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남녀 시설이용자 수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4]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성평등 목표	세부사업	문제점
자녀양육지원 확대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돌봄 분야의 일자리 확대로 중장년 여성의 고용 증진	아이돌봄 지원	성평등 목표는 2개인데 성과목표는 1개만 제시하고 있어 두 가지 성평등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청소년수련시설의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성별수혜분석과 성과목표가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다. 성인지 예·결산 연계 여부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에서 성과목표나 성평등 수혜분석의 부적절성과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의 경우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성별통계 미제시,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의 수혜자 분석 오류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성과목표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수(개소)이며, 사업수혜자는 청소년 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성별수혜분석과 성과목표가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종 수혜자와 괴리되므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를 “시설을 이용하는 남녀 청소년 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의 성평등 수혜분석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모든 청소년이고, 성과지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위반 시정 등 개선이행률로 성별수혜분석과 성과지표가 동 사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성과목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또한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성과목표 모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4.10.

Ⅲ 개선과제

2009년 처음으로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 이후 7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수차례의 걸친 성인지 예·결산서의 국회 제출뿐만 아니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안착, 즉 국가재정운용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논의와 학계, 연구원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통하여 국가재정이 보다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배분되고 그 결과 현저한 성평등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성인지 결산서의 구성이나 작성체계를 보면 국가 성평등 목표-작성기관별 성평등 목표-성인지 대상사업-대상사업별 성과목표 간 연계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단년도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중장기적 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작성기관별 성과목표나 성평등 효과분석에 있어서도 아직 부적절하게 작성된 사업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2012년 71.1%, 2013년 73.0%, 2014년 68.8%, 2015년 70.9%로 지난 4년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 간 성평등한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별 성인지 대상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이 취약하다. 지난 수년간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을 통하여 성인지 예·결산서가 제시한 성인지 대상사업, 성별 수혜자 통계, 성과목표 등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1. 성인지 결산서 구성 및 작성체계 정비 필요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고려할 때, 현행 성인지 결산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성인지 결산서는 국가재원이 국가의 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이 이러한 성평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국가 성평등 목표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채, 부처별로 작성된 성인지 결산서를 취합하여 정부 성인지 결산서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동 결산보고서를 보면 국가 성평등 목표 → 작성기관별 성평등 목표 → 성인지 대상사업 → 사업별 성과목표 → 부처별 성평등 목표 → 국가 성평등 목표간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다.

작성기관별로 자체적인 성평등 목표,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 성과목표를 달성한 대상사업이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작성기관의 성인지 예산운용이 국가의 성평등 제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종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이 실제 국가의 성평등 제고 그리고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국가재원배분방식 전환에 실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14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사회전반에 걸친 성별격차 문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제고를 위한 국가 성평등 목표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에 작성기관별로 소관 사업에 맞게 자체적 성평등 목표,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목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가 성평등 목표, 작성기관별 성평등 목표, 성인지 대상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단년도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다.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업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성과목표를 달성한 반면 일부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꾸준히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혜자나 수혜비율의 확대효과가 비교적 큰 사업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지속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성과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였거나, 성과목표의 달성 자체가 예산배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보다 영향을 받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1)]

이와 같이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성인지 대상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성인지 결산서는 단년도 시각에서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이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별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부처별 개요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에는 당해 연도의 실적을 작성하더라도 성인지 대상사업별 집행내역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제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직도 성과목표 및 성평등 제고효과 분석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통해 일부 사례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 지원(R&D)'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음에도 여성수혜자 비율은 이것보다 낮게 설정하여 성과목표치로의 실효성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관리사)', '노인요양시설 확충'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성평등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은 성과목표치를 단순히 최근 3년간 평균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등록사업'은 여성 수혜자 목표치를 86.2%로 설정하여 남성차별적인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

1) 자세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 「성인지 결산서 분석」, 각년도

현재 「국가재정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작성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하에 기획재정부는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센터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각 작성기관의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작성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성인지 결산서 작성 상 오류가 빈발하고 있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원 및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인력보강 등을 통한 역량 제고로 각 부처가 작성한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 성과목표·성평등 효과분석의 문제점

소관	세부사업	문제점
미래창조과학부	중견 연구자 지원(R&D)	사업대상자 중 여성 비중 대비 여성 수혜자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R&D)	여학생 사업수혜자 절대치로 성과목표를 측정하여 사업대상자 중 수혜비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과목표 달성도 판단이 어려움
외교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목표가 부적절함
	해외봉사단(ODA)	
법무부	직업훈련	직업훈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목표로 재설정 필요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사업(성폭력 사범 단속 지원)	단속 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인 지표로도 해석 가능하므로, 성과목표 재설정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Korea Travel Specialist교육)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교육 참여자로 동일하게 설정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정보센터는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불편처리센터 이용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목표 재설정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산출방식 부적절
	농업경영체등록사업	성과 목표를 여성이 86.2%로 수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성비에 맞게 50.0% 내외로 수정 필요
중소기업청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성과목표를 단순하게 최근 3년간 평균치로 설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 의료관리사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목표 설정
	노인요양시설 확충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지않는 성과목표 설정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	성과목표가 성 평등 목표와 연계되지 못함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성과목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성평등 목표는 2개인데 성과목표는 1개만 제시하고 있어 두 가지 성평등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
	청소년시설안전지원	성별수혜분석과 성과목표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성과목표의 성인지적 관점 결여

2.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 노력 강화 필요

성인지 결산서의 기능 중 하나는 국가의 재정운용을 통한 정부의 양성평등 구현의지 및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성과목표의 달성 실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343개 성인지 대상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복수의 성과목표를 가지는 사업이 존재하는 이유로 인해 2015년 성과목표는 총 423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300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70.9%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4년 성과목표 달성률 68.8%에 비하면 조금 향상된 수준이지만 2012년 71.1% 그리고 2013년 73%보다는 저조한 것이다.**

성과목표가 많은 기관일수록 성인지 대상사업이 많고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의 성평등 제고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외교부(21개), 행정자치부(12개), 문화체육관광부(36개), 농림축산식품부(20개), 고용노동부(47개), 국토교통부(16개), 해양수산부(11개), 중소기업청(21개)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달성률이 저조하여 이들 기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 성과목표 달성이 저조한 주요 기관

(단위: 개, %)

기 관	대상사업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외교부	12	21	9	12	42.9
행정자치부	10	12	6	6	50.0
문화체육관광부	26	36	23	13	63.9
농림축산식품부	18	20	13	7	65.0
고용노동부	45	47	29	18	61.7
국토교통부	11	16	8	8	50.0
해양수산부	10	11	7	4	63.6

주: 2015년 정부 성과목표 달성률 70.9% 이하 기준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미래창조과학부(16개), 보건복지부(46개), 여성가족부(66개)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달성실적이 우수**하여 동 기관에 있어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제고효과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성과목표 달성이 우수한 주요 기관

(단위: 개, %)

기 관	대상사업	성과목표(A)	성과목표 달성여부		
			달성(B)	미달성	달성률(B/A)
미래창조과학부	11	16	15	1	93.8
보건복지부	37	46	40	6	87.0
여성가족부	51	66	55	11	83.3

주: 2015년 정부 성과목표 달성률 70.9% 이상 기준
자료: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상에서 보듯, 국가 전체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아직 미흡하고,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과 성과목표를 많이 보유한 주요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저조하여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라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성과목표 달성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여 사업추진이 수혜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하지 못해 비록 성과목표는 달성하더라도 수혜자 증가나 양성평등 제고효과가 미미하거나 성과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는 성과제고를 위해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업수행 방식의 변화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관별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수혜자 확대 효과, 사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 양성평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달성실적의 제고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가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지 결산의 환류 기능 강화

성인지 결산의 중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환류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인지 결산의** 이러한 **환류기능이 취약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즉, 2010년 성인지 결산심사부터 2014년 성인지 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부적절성 문제,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분석 미흡 문제, 성인지 결산서 작성상의 오류 등 다양한 문제를 반복하여 지적하였으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의 경우 사업대상자 중 여성비율보다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이 낮게 설정되어 여성 수혜자 비율을 높이도록 지적받았으나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여성문화인들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며,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사업'은 성과목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지원)사업'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부적절성, '어린이집평가인증 사업'의 성과목표의 부적절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와 더불어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수혜자 산정 방식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연장지원금 사업'은 성과목표를 지원인원수로 설정하여 제시된 성평등 목표와 성평등 기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여성근로자 지원 비율로 보완하라고 지적하였으나 2015년 성인지 결산서에서도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Ⅲ)」(2013),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2013) 참조

여성가족부의 경우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성별통계 미제시,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수혜자 분석 오류 문제 등이 지적되었는데, 아직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국민임대사업'은 연간 국민임대 건설호수를 사업수혜자 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성과목표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성과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인지 결산의 환류기능이 취약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체계 및 기관별 역할이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즉, 현행「국가재정법」과 동 법 시행령이 단지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성인지 예산제도를 총괄·운영하는 주체와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차례에 걸쳐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취지 및 성과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각 부처간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첫째, 각 부처는 성인지 예산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성인지 예산 담당인력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작성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성인지 예산제도 전담부서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결산서의 취합에서 벗어나 성인지적 국가재정운용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하는 등 제도운영의 총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차원의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 괄 | 김광묵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문종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동찬 행정예산분석과장

작 성 | 강상규 김성수 김성은
김태은 남 희 심예원
윤성식 이홍석 조가영
조은애 조효정 채미강
한성진

지 원 | 양희열

결산분석시리즈 Ⅳ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일 2016년 7월 14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 02) 788-3771 | sba@nabo.go.kr

ISBN 978-89-6073-927-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2-001044-10